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1일, 신영대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13.)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영대의원)

현행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뒤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은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임.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개정안은 동물 소유자의 사망 등에 따른 부재로 인하여 방치된 동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보호조치를 하도록 그 의무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동물보호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을 발견한 경우 구조·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동물들의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직접 보호조치를 받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하여 보호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그런데 소유자의 사망·입원·행방불명·구금 등의 사유에 따른 부재로 방치된 동물 역시 유기·유실동물 등과 마찬가지로 소유자등에게서 직접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지만, 현행법상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방치된 동물에 대하여 구조·보호조치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최근 1인 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점차 소유자의 사망 등에 따른 부재로 반려동물이 홀로 방치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동물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소유자가 부재하여 방치된 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거소 등에 출입하여 해당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은 주거의 자유 등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방치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필요성과 소유자의 권리보호 측면을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개정안이 제시하는 소유자의 부재 사유 중 입원·행방불명·구금과 관련해서는 부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하여 현행법 제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로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들고 있으며, 시행규칙을 통해 그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유자의 부재로 방치된 동물 역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로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동물보호법」 제44조에서 소유자등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인수·보호하는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는 등 현행법으로도 소유자의 부재로 동물이 방치되는 문제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